



KBS

노동조합 특보

발행인 정조인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전화 02-781-2990 | 팩스 02-781-2999

이메일 kbsunion@kbs.co.kr | 트위터 @kbs_union

2018년 10월 10일 발행

kbsunion.or.kr

29호

양사장과 동아리가 감행한 최악의

인사참사



1. 사장 취임 전, 사규심의위원회까지 교체해가면서 일방적 편법적인 인사규정 개정

양사장은 취임하기도 전에 보직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 인사규정 제14조 개정을 시도하였다. 인사규정 개정의 핵심 골자는 그동안 1직급 이상이 보임해오던 국장급 직위 보직을 2직급 갑 이상으로, 2직급 갑 이상자 중에 보임해오던 부장급 직위 보직을 2직급 을 이상으로, 2직급 을 이상이 보임해오던 팀장급 직위 보직을 3직급 이상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보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다. 자격이 되지 않는 자기편 사람들을 보직에 앉히기 위해 KBS 50년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직기반을 송두리째 흔드는 일을 사장 취임하기도 전에 시작한 것이다.

이번 인사규정 개정은 몇 가지 점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고 앞으로 KBS에 커다란 후유증을 멀리 남길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위법〉

일반적으로는 인사규정 개정은 사장 취임 후 기본방향을 천명하고 일정 기간 연구 과정을 거치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에 따라 정해진 절차를 준수하고 구성원 의견수렴을 거친 후 추진한다. 그러나 관례와 다르게 사장 취임도 하기 전에 보이지 않은 손이 작용해 전격적으로 인사규정을 개정 시도했다. 그만큼 밀실에서 이뤄진 행위로 정당성이 없고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더구나 쿠데타 모의처럼 전격 시도된 인사규정 개정 작업이 사규심의위원회에서 반대에 부딪히자 그동안 부장

급으로 구성된 사규심의위원회를 편법으로 팀장급으로 급히 하향 변경해 자기 입맛에 맞는 위원으로 다시 구성해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하면서 편법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5공 언론통폐합 시대에도 이러한 폭거는 없었는데,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과감하게 짓밟아 버렸다.

〈코드인사를 위한 탈법적 개정〉

둘째는 개정 사유에 문제점이 있다. 인사규정을 개정하면서 사측이 밝힌 개정 사유(법무실-841호(2018.04.11.))는 “보직대상자 확대를 통한 업무 전문성 활용 및 효율적인 업무 추진” 이라고 밝혔는데 과연 업무 전문성과 보

직대상자 확대와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994년 新인사제도 시행 시에도 젊고 유능한 인재들 등을 한다는 합리적인 사유를 내세웠고, 정연주 전 사장이 취임하여 2004년 팀제 시행을 위해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이때 보직기준을 변경하면서 “팀제 조직에 적합한 인력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그러나 이번 인사규정 개정의 사유로 업무 전문성 활용이라고 밝힌 것은 대단히 납득하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콘텐츠직종(과거 사서직)으로 입사해 약 30여 년을 영상콘텐츠 발굴 수집업무 촬영원본 메타데이터관리, KBS도서관 관리 등 방송자료 업무를 수행한 직원이 성과평가부장에 보임되고, 영상자료, 인물정보, 사진콘텐츠 등을 다루던 직원이 인사운영부 팀장으로 보임되었는데 과연 보직대상자 확대와 업무 전문성 상관관계가 이런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과거 인사규정을 개정할 때는 최소한 합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코드인사를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웠는지 ‘업무 전문성 활용’이라는 거창한 단어를 곁고 온 것이다.

2. 앞으로 닥칠 엄청난 재앙 구성원의 조로화, 조직 피폐화가속

탈법한 인사규정 개정의 결과는 앞으로 간부를 하다가 평보직 발령 난 직원의 업무 효율성 확보 문제가 심각할 것이라는 점이다. 2004년 팀제 시행 이후 KBS가 인력관리 측면에서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조직구성원의 고령화에 따른 시니어 인력활용 문제’, ‘평보직으로 떨어진 간부들의 업무 효율성 확보 문제’, ‘급변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전문성 확보문제’이다.

기존 10년, 12년, 17년이 되면 보임될 수 있는 팀장, 부장, 국장을 이제는 5년, 10년, 12년이면 보임될 수 있게 만들었다. 정년이 60세로 2년 연장됨에 따라 과거 58세 정년 제도에 맞춰 설계된 승진 승격 보임 제도 등을 채용에서 퇴직까지 근본적으로 재설계하여야 하는 큰 숙제가 걸려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개혁의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으니 큰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국회, 감사원의 상위직급과다 지적에 역행>

또 그동안 KBS는 팀제 시행 이후 국회와 감사원으로부터 끊임없이 상위직급인력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 초지일관 “2직급은 실무인력”이라고 답변해왔다.

국회의 ‘KBS 2016 결산승인에 대한 부대조건 10번째 시정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해 KBS 홈페이지에 게시된 KBS의 조치 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직급은 실무인력으로 상위직급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다. 2직급은

| 구분 | 본부장 | 센터장급 | 국장급 | 부장급 | 팀장급 |
|--------------------------|-----------|----------|-----------|-----------|-----------|
| 개정 전 인사규정 적용시 자격미달비율(인원) | 100% (3명) | 67% (4명) | 80% (46명) | 13% (25명) | 13% (41명) |

개정 전 인사규정 적용시 자격미달 비율

<단협 위반>

KBS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에는 ‘직제 및 인사제도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은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문구는 비록 협의라고 표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는 인사권 침해는 피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문구일 뿐이며 사실상 합의로 운영돼 왔고 그동안 이를 철저히 준수해왔다. 합의로 운영되어온 관행은 2017년 감사원 감사 시 KBS 사측이 낸 공식 문건 답변 자료에서도 고스란히 인정하고 있는 엄연한 사실이다(아래 참조). 이는 인사제도가 개인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노사가 인식을 같이하고 최대한 자의성을 배제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이다.

* 2017. 한국방송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 (2017.10)

“KBS는 직급 및 승진제도 개선을 경영진이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노동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문제가 예상된다는 노사합의 또는 동의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과거에 신경영기획단, 밀레니엄기획단, KBS개혁추진단, 스마트KBS추진단, 혁신추진단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한시적 특별 조직을 설치해 인사와 임금 등 각종 제도에 대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노사 간 수많은 회의를 통해 의견 차이를 좁혀 최종 합의로 시행해 왔다. 1994년 젊고 유능한 인재 등을 위한 신인사제도 인사규정 개정과 2004년 승격시험 폐지 및 2직급 갑을 분리, 팀제 도입을 위한 인사규정 개정 등은 최소 1년 이상의 선진사례연구, 타사비교연구 등 깊이 있는 제도 연구와 노사 간 협의, MT를 거쳐 노사 간 합의로 시행한 것이 그 예이다.

조직에서 임금 인상과 승진만큼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을까. 그렇기에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는 인사규정 개정은 방향성 제시나 토론, 토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 작전하듯이 밀실에서 진행됐다.

| 구분 | | 1994 | 2008 | 2018 |
|-----------------|-------|---|---------------|----------|
| 직업인력 기준 | 국장급 | 관리직급, 1직급에서 3년 이상 부장급 직위 보직 경력자 | 1직급 이상자 | 2직급갑 이상자 |
| | 부장급 | 관리직급, 1직급, 2직급 승격시험 합격 후 3년 이상 차장급 직위 보직경력자 | 2직급갑 이상자 | 2직급을 이상자 |
| | 팀장급 | 1직급, 2직급 승격시험 합격자 | 2직급을 이상자 | 3직급 이상자 |
| 정년 | 58세 | 58세 | 60세 | |
| 직급승진 제한연령 | 55세 | 55세 | 제한 없음 | |
| 한국인평균수명 (통계청자료) | 73.4세 | 79.6세 | 82.3세 (2016년) | |

정년연장, 평균수명 연장과 보직원칙 변천과정

대졸 신입사원이 최소 10년 차가 되면 도달할 수 있는 직급으로 조직의 허리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실무인력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2017년 감사원의 한국방송공사 기관운영감사에서 ‘상위직급 과다운영 등 인력운영 부적절’주의, 제도상 개선 처분에 대해서도 같은 논거로 KBS는 답을 하였다. 그런데 4직급으로 입사해 12년 근무하면 국장이 되도록 규정을 바꾼 지금 앞으로 국회와 감사원에 어떻게 답할 것인가?

양 사장 취임 이후 보직자 인사를 분석해보면 본부장 6명 중 4명 57%가 2직급 갑에서 보임되었고, 센터장급 3명은

모두 2직급 갑으로 개정 전 인사규정에 따르면 100% 보임이 될 수 없는 자격미달 상황이다. 국장급 실제 승격발령난 57명을 보면 53명(95%)이 직원에서 바로 국장으로 3단계 수직 상승하였고, 75%인 45명이 2직급 갑에서 보임되었다. 국장급 중 3명은 팀장도 거치지 않은 2직급을에서 보임되었다. 부장급 실제 승격발령난 198명 중 113명 57%가 직원에서 부장으로 2단계 수직 상승하였고, 2직급 갑 169명 83%, 2직급을 25명 13%를 차지하였다.

2~3단계 수직상승한 소수 몇 명이 막대한 이익을 보는 반면 열심히 일했지만 특정집단에 까지 않아 간부가 되지 못하는 조직이 과연 합리적인가? 이제 앞으로 일보다는 사내 정치가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준다고 인사규정에 맞을 박은 것과 같다.

눈앞에 보이는 알파한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단체협약과 관행, 관례를 모두 무시하고 쿠테타를 저지르듯이 비민주적으로 밀어붙인 인사규정 개정이 KBS를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지는 명약관하다.

3. 징계위원회 계류 중인 자를 버젓이 부사장 임명

| 구분 | 처분(시정) | KBS 답변 |
|-------------------|---|---|
| 2017 국정감사 | 2.감사원감사에서 지적된 KBS직원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해반기 1회씩 검직하기기준을 안내하고 수시로 강의 등 외부활동에 대한 복무지침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규위반 등 비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신상필벌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비위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
| 2017 감사원감사 | (3)겸직 및 외부강의 등 복무관리 불철저 | |
| 2016 국회 결산승인 부대의견 | 15.KBS는 직원 개인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관리를 강화한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검직승인제도, 외부행사 사회 출연 등에 관한 지침등 제도를 통해 자칫 일탈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들을 철차 및 실제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사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및 사규를 위반시에는 인사규정 제56조(징계)에 의거,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징계 등 적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

외부 강의 등 겸직금지 위반,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KBS 답변

*KBS 홈페이지 참고

2017년 국회의 KBS 국정감사 결과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KBS 직원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시정,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KBS의 답변(KBS 홈페이지 참고)은 ‘수시로 강의 등 외부활동에 대한 복무지침을 시행하여 직원들의 일탈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비위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분하고 사규위반 등 비위 사실이 밝혀지면 신상필벌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여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부 강의로 돈을 받아 취업규칙 위반한 자를 부사장에>

이러한 KBS의 입장과 원칙 표명에도 불구하고 외부 강의로 돈을 받아 취업규칙 위반으로 1심에서 중징계인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자를 부사장으로 임명하는 탈법을 저질렀다. KBS 50년사에서 조유의 사태다.

<국가공무원법상 승격은 불가>

이미 징계위원회 1심에서 감봉 3월의 처분을 받은 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에 사표를 수리하지 않는 것이 합당한 조치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또 동 규정 제10조는 오히려 신속하게 징계를 처리하라고 되어있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2017년 돈 봉투만찬으로 물의를 빚은 이모 서울중앙지검장과 안모 국장의 사표수리가 거부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들에게 사표수리 대신 징계절차에 따라 징계를 진행해 징계위원회에서 면직처분을 하였다. 이것이 정

도(正道).

*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대통령훈령 제384호, 2018. 5.30)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1.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제10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각급 징계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을 보면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대해 1) 승진임용의 제한 2) 전보제한 3) 의원면직 제한 4) 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 대상 5) 국외출연 제한.중단 6) 정부포상 추천제한이 여섯 가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의원면직의 제한) 제10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의 ‘비위공직자 의원면직처리 제한 및 의원면직 신청자에 대한 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등을 종합해 보면 양 사장은 사표수리를 할 수 없고 신속하게 2심 징계를 확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표를 수리해주고, 그 결과 징계가 없어 부사장 임명에 문제가 없다고 부사장 임명 등의 제정을 하는 탈법을 저질렀다. 이를 법적으로 살펴보고 견제해야 할 이사회가 임명 동의를 해주는 조유의 폭거가 일어난 것이다. 감봉 3월을 1심에서 받은 공무원이 2심을 기다리는 중에 사표를 내고 정무직 차관으로 임명받았을 경우 KBS 9시 뉴스는 과연 어떻게 시청자에게 전달할까?

더구나 이런 무자격 하자투성이 부사장이 KBS 진실과미

래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니, 돈을 받아 1심에서 감봉 3월을 받은 자가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이 된 꼴이다.

그동안 KBS는 금품 및 향음 수수, 공금횡령·유용, 회계질서문란,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등 몇 가지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사면조치를 할 수 없고 징계처분효력이 지났을지라도 간부로 등용하지 않는 사실상 윈스트라이크 아웃(One strike out)을 할 만큼 엄하게 다룬다는 불문율이 존재해온 도덕성이 뛰어난 공명방송이었다. 이제 이 건 하나로 공명방송의 도덕성은 바닥에 떨어졌다.

<KBS 사규, 징계 중인 자 승격 제한>

인사규정 제17조에 따르면 1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승격 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놓고 있다. 징계처분효력이 지나지 않는 한 간부 보임, 직급 승진, 포상 모두 불가능한 것이 KBS 현행 규정이다. 징계양정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취업규칙 겸직금지위반은 최소 견책이상의 징계를 처하도록 되어 있다.

최소 견책을 받았다할지라도 규정상 최소 6개월은 승진이 제한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자에 대한 자속기간을 의미하는 최소한의 불이익기간이다. 이런 사규위반 하자 있는 부사장을 임명하는 순간, KBS가 공정성 공공성을 기본방향으로 하는 공명방송이라는 걸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KBS 감사는 동일사건 재발방지를 위해서 사규를 멋대로 운영한 자와 1심 이후 30일 이내 재심을 열지 않은 사유, 사표제출 시 규정에 정한 대로 징계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외 정필모 부사장이 박사학위를 취득할 당시의 근태 문제에 대해서도 시효와 관계없이 사실 여부는 철저히 조사해 역사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4. 자신들의 블랙리스트로 평직원까지 찍어내기 보복인사, 자기들만의 코드인사

양 사장은 취임 후 간부인사를 자기편으로 전면 교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평직원에게까지 보복인사를 단행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크게 문제 된 블랙리스트가 악마의 탈을 뒤집어쓰고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블랙리스트로 다시 나타났다. 합당한 사유 없이 보직을 떼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출퇴근에 거의 하루를 소비하는 먼 지역으로 보복인

사발령을 냈다. KBS에서도 노동조합이 창립되기 전에는 부당한 자의적인 인사가 자주 있었다. 그러나 1988년 KBS 노동조합 창립 이후 KBS 노동조합의 눈물겨운 투쟁의 산물로 단체협약 제31조에 KBS 인사에 대한 헌법적인 규정 즉 인사대원칙을 규정한 이래 철저히 견제되었다.

먼저 단체협약 제31조 제1항은 “임면, 이동, 승진 등 인사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한다”라고 규정하여 KBS 인사의 합리성 공정성 원칙을 밝히고 있다. KBS는 특정 직원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다른 부서로 마음대로 몰아낼 수 없는 규정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양 사장 이후 인사발령의 기준은 그동안 지켜온

원칙과 기준이 아니라 자기편이나 아니냐는 잣대만 있을 뿐이다. 인사관 해당부서에 필요한 사람인지, 본인의 희망은 무엇인지, 주거지가 어디인지 등을 종합 고려하여 최대한 합리적인 인사발령을 내는 것이 인사원칙이자 관례였다. 그렇기에 고충 처리하는 제도도 마련해 구제절차까지 둔 것이다. 인사관 자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원칙을 수립해 두고 이를 준수해왔는데 양 사장 이후 인사는 오로지 내편이나 내편이 아니냐는 기준만으로 찍어 내리기 보복인사가 횡행하고 있다. KBS 노동조합이 30년 투쟁의 산물로 어렵게 정립한 인사기준과 인사원칙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버렸다.

〈일반직 직원 전체 중 52% 인사발령〉

-117일 동안 평균 1.6일에 12회

둘째, KBS 인사의 대원칙은 바로 능력과 전문성 원칙이인데 이를 강그리 무시해버렸다. 양 사장 취임 후 117일간 실시한 인사를 분석해보면 KBS가 견지해온 인사대원칙이 얼마나 훼손했는지를 극명하게 알 수 있다. 양 사장은 취임 후 75회에 걸쳐 2,391명을 인사하여 평균 1.6일에 12회꼴, 1회당 평균 32명을 인사해 일반직 직원 약 4,600여 명의 52%를 인사하였다. 양 사장은 취임 후, 직제개편에는 하지 않고 11월 연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

어서 대단위 직제개편 인사발령이 없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양적 측면에서 KBS 기간 조직의 절반이 넘는 52%를 뒤섞어 놓은 것은 가히 혁명적인 뒤섞임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1980년 5공 언론통폐합 이후 최대의 인사발령을 시행한 것이다.

〈간부 거의 100% 교체〉

그동안 보임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간부나 직원은 사장 교체와 관계없이 자리를 유지하여 최소한 역량을 발휘하고 조직 연속성을 유지시켜왔다. 그러나 양 사장은 간부 100%를 교체해 사실상 KBS를 초도화시켰다. 업무의 연속성과 조직의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

갈수록 전문성이 더욱 요구되는 인공지능시대임에도 '전문성은 필요 없다 코드만 있으면 된다'는 식의 인사발령이었다. 노사 간 회의를 해보면 제대로 알고 정확하게 답을 하는 간부가 없다. 연혁을 모르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업무수행에 꼭 필요한 기본지식조차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보니 조직이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인사보복을 위한 특파원 지국 폐쇄〉

일부 특파원 지국 폐쇄 논란과 특파원 선발, ABU 스포츠협력관 선발 등 보도본부에서 이루어진 인사 또한 문제가 심각하다. IMF, 미국 금융위기 때에도 폐쇄된 적이 없는 지국이 합리적인 사유 없이 사람이 밍다고 폐쇄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비준 것은 정말 이게 회사나 일을 정도다. 오죽하였으면 특파원 스스로 자진 귀국할 테니 지국 폐쇄만은 없던 걸로 해달라는 진심 어린 호소가 있었을까!

〈본부노조 아니면 철저히 배척〉

양 사장 취임 이후 이루어진 국장급 인사에서 KBS 노조 조합원 출신이 한 명도 없다. 적절한 안배는 고사하고 양 사장은 100% 자기들만의 리그를 펼치고 있다.

더구나 2017 감사원 감사에서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 부적정' "건으로 징계처분요구된 자를 간부로 임용한 것은 감사원 감사처분을 정면 위배할 뿐만 아니라 사측이 주장해 온 일벌백계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다. 또 징계처분요구자 중 일부는 간부 임용을 예상하고 인사위원회에서 징계 형량을 임용에 문제없게끔 꿰맞춰 확정해 준 의심 사례도 다수 있어 보인다. 앞으로 감사원 감사처분요구에 대한 인사위원회 징계 처리 절차와 적절한 징계 양형이 있었는지 등 철저한 조사를 책임을 물어야 한다.

5.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

막가파식 불법 설치 운영

2018년 6월 5일은 KBS 50년 역사에서 기괴한 괴물이 탄생한 날이다. 바로 KBS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가 설치된 날이다. 50년간 유지해온 KBS 감사의 권한을 일시에 무력화시키는 초 괴물이 탄생한 것이다.

〈설치 목적의 부당성〉

진미위의 첫 번째 문제는 핵심적 기능, 본래적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이 과연 임시기구 특별기구로 발족할 수 있느냐다. 임시기구나 특별기구를 만드는 것은 본래 보편적 일반적 핵심적 기능을 대체하는 목적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기구여야 한다. 예를 들어 KBS 보도 본부를 대체하는 보도2본부를 임시기구, 특별기구로 만들 수는 없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감사를 대신하는 기구를

만들 수 없는 것이다.

임시기구나 특별기구는 설치기간이 한정적이라는 것 외에 설치 목적이 기존 조직에서 수행할 수 없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진미위는 KBS 직제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임시기구, 특별기구가 기존 본래 목적의 조직을 창설할 수 있다면 대통령은 언제든지 자기 맘에 들지 않는 제2대법원을 만들고 양 사장이 제2의 이사회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즉 설치목적에 위반한 것이다.

〈공공감사법 방송법 위반〉

둘째 진미위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 진미위가 조사 확인 등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명백하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방송법 제63조 제2항에 따라 내부감사는 감사만이 할 수 있고

KBS 정관 제19조 4항에 감사가 내부감사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미위가 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 헌병 완장을 차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헌병 업무를 수행하면 법은 헌병이라고 보는 것과 같다.

〈감사기구의 장과 임원의 겸임 불가〉

셋째 진미위 구성의 문제인데 위원장인 부사장의 결격사유는 이미 언급했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원초적으로 감사기구 장이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나아가 진미위 조사역의 개인별 결격사유도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진미위라는 괴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근거도 없는 조사행위를 수행한 모든 것에 대해 진미위 관련 본안 소송에서 법원이 반드시 처벌을 내려질 것이다.

6. 합당한 사유 없는 상위직급 승진 유보

매년 시행해 오던 관리직급, 1직급 등 상위직급 승진을 양 사장은 취임 후 현재까지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인사규정 제26조 제6항에 따라 매년 실시하는 것을 원칙이다.

6월 25일 회사 측은 "현재 공사에서 상위직급 운영개선을 포함한 직급 체계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매년 7월 1일을 원칙으로 시행해 온 관리직급, 1직급 승진을 유보하고 향후 관련 제도 개선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고지를 하였다.

그러나 세월호 사건으로 사장이 해임되어 궤위 상태라든지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나 정상적인 승진 인사를 할

수 없다든지, 최소한 6개월 전부터 관리직급, 1직급 폐지에 대해 노사 간 합의에 도달하여 간부승진인사를 하지 않는 것이 하는 것과 비교해 더 이익이 크다면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충분히 합리적인 사유가 존재한다면 일시적인 유예가 가능하다. 하지만 개선안을 마련하지도 않고 노사 간 협의도 진행 중이지 않은 상황에서 양 사장 임의로 간부 승진 인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규정을 무시하고 편법과 불법으로 자행한 인사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양 사장은 취임 후 일방적 편법적인 인사규정 개정, 취업규칙 위

반자의 임명, 평직원까지 찍어내기 보복인사, 코드인사, 막가파식 진미위 불법 설치 운영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불법과 탈법을 저질렀다. 기본적 경영 상식도 화사를 이끌어갈 리더십도 가지고 있지 않은 무능력함으로 7개월 만에 회사를 구멍가게, 놀이터 수준으로 바꿔놓은 것은 어찌된 자명한 것일지 모른다.

KBS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양 사장은 떠나면 그만이었지만, 이 모든 고통은 남은 직원들이 짊어지게 될 것이다.

KBS노동조합은 끝까지 잘못된 불법과 탈법을 바로잡을 것이다.